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83
----------	-----

2020. 3. 24.(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2020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2020년 3월 5일
- 라. 상정일자: 2020년 3월 13일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통학이 취약한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해소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통학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 대상(안 제5조)
- 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0조)
- 통학지원 차량 운영 실태조사(안 제11조)
- 통학차량 안전교육(안 제12조)
-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안 제13조)
-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가.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통학이 취약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유·초·중학교 원거리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등·하교 통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매년 통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통학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학 지원 정책 시행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안 제15조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함)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통학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

원회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통학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통학 지원과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학 지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통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 안 제14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자치 단체와 관련 기관 등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강조 하였음.

나.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 되고 통학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통학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타 당한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농·산촌학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를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통학차량,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학차량 공동이용”이란 통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인근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행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 제5조에 따른 학교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 및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촌학교
2.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학교 통합 및 학교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공립유치원 통학여건 개선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행정과장, 학교혁신과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1명 이상 포함),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신청이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및 차량 이용 학생 수,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통학 지원에 대한 학생과 그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이용 활성화) 직영차량 보유 학교장은 인근 학교와의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지원청위원회 설치) 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관내 학생통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행되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학차량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教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초·중등교육법[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과 관련한 통학차량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통학 예산 지원

3. 관련조문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2조제2호의 농·산촌학교
2.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학교 통합 및 학교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공립유치원 통학여건 개선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통학차량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촌학교
 -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2호에 의한 중학교 중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31교, 188명, 2020년 857,280천원 예상
2.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지원이 결정되어 비용 추계 불가
3.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과대과밀 및 학생 쏠림 학교 학생의 분산배치 수용을 전제로 11교 예상

급	지역	과대과밀 및 학생 쏠림 학교	분산배치 대상교	비고
초	청주	중앙초	율량초	교당 1대, 64,961천원, 2020년 총 714,571천원으로 산정
			주중초	
			청주내덕초	
		창신초	사직초	
		솔밭초	증안초	
			진흥초	
		창리초	오창초	
	충주	국원초	연수초	
	제천	명지초	남당초	
		동명초	용두초	
		장락초	제천중앙초	

4. 학교 통합 및 학교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 통학차량 지원으로 2020년 예산 편성액 9,604,956천원

5. 공립유치원 통학여건 개선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 통학차량 지원으로 2020년 예산 편성액 3,422,960천원

6.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학생 안전 등의 사유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2020년 2교 (중앙초, 비봉초) 4대, 259,844천원 예상

※ 2020년 이후 향후 예산 추계는 연도별 5%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 하였음

나. 추계 결과: 5년간 82,108,726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예산 확보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4,859,611	15,602,591	16,382,720	17,201,856	18,061,948	82,108,726	
보통교부금	14,859,611	15,602,591	16,382,720	17,201,856	18,061,948	82,108,726	
세 출	14,859,611	15,602,591	16,382,720	17,201,856	18,061,948	82,108,726	
학생 통학 지원	14,859,611	15,602,591	16,382,720	17,201,856	18,061,948	82,108,726	
재원 조달	14,859,611	15,602,591	16,382,720	17,201,856	18,061,948	82,108,726	
의존 재원	소 계	14,859,611	15,602,591	16,382,720	17,201,856	18,061,948	82,108,726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4,859,611	15,602,591	16,382,720	17,201,856	18,061,948	82,108,726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